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1나20072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1나200725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합10746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승철

피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 2021. 8. 19.

판결 선고 2021. 9. 9.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합10746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D생) 사이의 별지 금전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5,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2014. 1. 27. 2억 원, 2014. 2. 3. 5,000만 원, 2014. 2. 19.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변제기 2014. 12. 9.1),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E의 대표자인 C은 E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별지 금전증여 목록 순번 1번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2014. 9. 1.부터 2015. 6. 21.까지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피고 H은행 계좌'라고 한다)로 174,300,000원을 송금하였고(이하 피고 H은행 계좌로의 각 송금행위를 통칭하여 '제1차 송금 부분'이라 한다), 같은 목록 순번 37 내지 39번 기재와 같이 2015. 8. 7.부터 2015. 9. 23.까지 피고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피고 I은행 계좌'라 한다)로 31,490,000원을 송금하여(이하 피고 I은행 계좌로의 각 송금행위를 통칭하여 '제2차 송금 부분'이라 한다), 피고 명의 계좌로 총 205,79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송금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하고, 위 각 송금행위로 인하여 송금된 돈을 합하여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3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 신용보증기금 등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약 6억 3,000만 원 이상의 채무, J에 대한 1억 5,000만 원 대여금 채무 등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 법원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의 인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C에 대하여 앞서 본 대여금에 관한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C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나)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위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제1차 송금 부분이 증여로서 사해행위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덧붙여 갑 제10호증,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한국산업은행, K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객관적으로 C과 피고 사이에서 제1차 송금 부분의 송금액이 피고에게 총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C이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제1차 송금 부분 중 상당한 금원을 피고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피고 산업은행 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피고 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 H은행 계좌로 약 7,390만 원 상당2) 을 이체하였다. 피고 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 H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된 돈 약 7,390만 원은 주로 ① 곧바로 C에게 송금되거나(피고 H은행 계좌 2015. 2. 6.자, 2015. 5. 29.자 거래내역), ② C의 채권자로 보이는 L3) 또는 M4) 등에게 송금되었고(같은 계좌 2015. 3. 24.자, 2015. 3. 26.자 거래내역), ③ C이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의 N카드 사용대금 납부 및 O카드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며(같은 계좌 2014. 9. 24.자, 2015. 3. 27.자, 2015. 4. 24.자 등 거래내역), ④ 그 외 매월 약 190만 원의 차임, 관리비, 자녀의 유치원 등록비, 생활비 지출 용도로 보이는 각종 카드대금 납부에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제1차 송금 부분은 대부분 피고 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C의 필요에 의해 C에게 지급되거나 C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C과 피고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되었을 뿐이다.

(2) 제1차 송금 부분이 이루어진 기간, 즉 2014. 9. 1.부터 2015. 8. 6.까지 동안 피고는

O카드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1	2014. 4. 8.	5월	5,000,000원	7	2015. 3. 2.	10월	8,000,000원
2	2014. 4. 17.	10월	10,000,000원	8	2015. 3. 26.	12월	6,000,000원
3	2014. 6. 24.	12월	14,000,000원	9	2015. 6. 12.	12월	13,000,000원
4	2014. 10. 8.	5월	5,000,000원	10	2015. 6. 30.	10월	3,500,000원
5	2014. 11. 27.	10월	8,000,000원	11	2015. 7. 31.	10월	2,500,000원
6	2015. 1. 2.	5월	5,000,000원			합계	80,000,000원

피고가 위와 같이 O카드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① 곧바로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C(P5))'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200만 원6) 이 이체되고, ② C의 채권자인 L에게 79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③ 피고의 O카드 대출 채무 원리금 변제에 13,509,132원7) 이 사용되었고, ④ 피고의 N카드 대금 결제에 4,739,240원8) 이 사용되었다. C이 이미 2010.경부터 피고 명의의 N카드와 O카드를 사용하여 카드대출을 받고 이를 사용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의 O카드 대출금 중 58,148,372원(3,200만 원 + 790만 원 + 13,509, 132원 + 4,739,240원)은 사실상 C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1차 송금 부분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피고 H은행 계좌에서 변제가 이루어진 피고의 O카드 대출 원리금 채무는 총 56,433,966원9) 이고, 피고의 N카드 대금으로 납부된 돈은 총 24,177,553원10)으로, 합계 80,611,519원(56,433,966원 + 24,177,553원)에 이른다. 피고의 H은행 계좌로 이체된 제1차 송금 부분 중 O카드 대출금 채무 변제와 N카드대금 납부에 사용된 부분은 C이 사실상 자기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C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원고는 피고 명의의 O카드 대출금 채무 또는 N카드대금 채무의 실질적 채무자가 C이라면 C이 피고를 통해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한 것 은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로서 이 역시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나, C이 채권자인 ○ 주식회사 또는 N 주식회사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 외에도 피고 H은행 계좌에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내역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① 매월 24일 전후로 이루어진 C과 피고의 거주지 차임 190만 원 지출
- ② 매월 말 30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의 관리비 납부
- ③ 70만 원 내외의 자녀 유치원 등록비
- ④ 가사 지출로 보이는 50만 원 미만의 Q카드, R카드, S카드 대금 납부

(4) 제1차 송금 부분 중 일부는 피고의 산업은행 정기적금 계좌로 편입되거나 피고의 K 보험료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 명의의 산업은행 정기예적금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는 제1차 송금 부분이 이뤄지기 전인 2014.

3. 11.경 각 개설되어 월 100만 원과 월 25만 원씩의 불입이 시작된 점, 피고의 K 역시 그 다수는 제1차 송금 부분이 이뤄지기 전 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차 송금 부분 중 일부가 피고의 정기적금 납부와 보험료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만으로는 여전히 제1차 송금 부분이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제2차 송금 부분이 증여로서 사해행위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송금 부분은 C이 피고 I은행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C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송금한 돈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 송금 부분이 피고에게 증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은 E의 직원인 T과 함께 2015. 7. 10. 'U'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면서 그 대표자 명의만을 피고로 정하였고, 이후 C은 U를 통해 종전까지 운영해오던 E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2) 피고 I은행 계좌가 U의 개업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7. 20.에 개설된 점, 'V, 서울시 지방세, W건물, X' 등 피고 I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다수는 C이 E 및 P를 운영하면서 사용해왔던 P 명의 F은행 계좌 또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의 거래내역과 동일한 점, 11ㄷ의 피용자인 T이 피고 I은행 계좌의 개설일인 2015. 7. 20. 200,000원을 입금하여 공인인증수수료와 범용인증수수료 114,400원을 사용하고 다시 남은 90,000원을 다시 인출해 가는 등 T이 피고 I은행 계좌 통해 U 운영에 필요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이 피고 명의로 U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금전거래를 하기 위해 피고 I은행 계좌를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제2차 송금 부분 중 피고 H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된 돈, 즉 피고의 처분권한 하로 옮겨진 돈은 2015. 8. 10.자 1,350,000원, 2015. 8. 26.자 5,925,100원으로 합계 7,275,100원이 전부인데, 피고 H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된 돈 역시 자녀의 유치원 비용, N카드 사용대금 결제, O카드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제2차 송금 부분의 대부분이 생활비 명목 또는 C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이상, 피고 H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된 돈 역시 피고에게 무상으로 공여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피고가 2015. 8. 24. 부모인 Y에게 23,706,022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제2차 송금 부분이 증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23,706,022원의 출처는 피고가 2014. 2. 19.부터 피고의 또 다른 I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와는 무관한 돈으로 보인다(제1심 법원의 I은행에 대한 2020. 10. 20.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흥준

판사김우수

판사조영철

별지

1) 2014. 1. 27.자, 2014. 2. 3.자 및 2014. 2. 19.자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각 변제기가 '2013. 12. 9.'로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1호증), 계약서 작성일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14. 12. 9.'의 오키로

보인다.

2) 150만 원(2014. 9. 12.) + 100만 원(2014. 9. 17.) + 200만 원(2014. 9. 24.) + 300만 원(2014. 10. 15.) + 200만 원(2014. 10. 24.) + 300만 원(2014. 10. 27.) + 200만 원(2014. 12. 1.) + 500만 원(2015. 2. 6.) + 500만 원(2015. 2. 6.) + 200만 원(2015. 2. 24.) + 300만 원(2015. 3. 1.) + 300만 원(2015. 3. 17.) + 200만 원(2015. 3. 24.) + 500만 원(2015. 3. 26.) + 100만 원(2015. 3. 27.) + 100만 원(2015. 3. 31.) + 300만 원(2015. 4. 15.) + 500만 원(2015. 4. 24.) + 300만 원(2015. 4. 24.) + 250만 원(2015. 4. 27.) + 300만 원(2015. 5. 15.) + 200만 원(2015. 5. 26.) + 500만 원(2015. 5. 26.) + 200만 원(2015. 5. 26.) + 100만 원(2015. 5. 27.) + 400만 원(2015. 5. 29.) + 190만 원(2015. 6. 24.)

3) 제1심 법원의 F은행에 대한 2019. 12. 4.자 금융거래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L는 C 명의 F은행계좌로 2014. 3. 13. 500만 원, 2014. 4. 2. 500만 원, 2014. 5. 7. 350만 원, 2014. 6. 2. 500만 원 등 수차례 돈을 입금했고, C으로부터 2014. 4. 11. 80만 원, 2014. 5. 12. 150만 원, 2014. 6. 11. 160만 원 등 수차례 돈을 지급받아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L가 C에게 돈을 대여하고 C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4) 제1심 법원의 F은행에 대한 2019. 12. 4.자 금융거래제출 명령 결과에 의하면, M은 C의 F은행계좌로 2014. 10. 2. 3,500만 원, 2014. 11. 27. 810만 원 등을 입금했고, C으로부터 2014. 10. 30. 70만 원, 2014. 12. 1. 70만 원 등 수차례 돈을 지급받아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M이 C에게 돈을 대여하고 C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5) C이 운영한 개인사업체의 상호이다.

6) 500만 원(2014. 4. 8.) + 1,000만 원(2014. 4. 17.) + 500만 원(2014. 10. 8.) + 500만 원(2015. 1. 2.) + 400만 원(2015. 3. 2.) + 100만 원(2015. 3. 3.) + 200만 원(2015. 6. 30.)

7) 3,563,599원(2016. 6. 24.) + 3,496,750원(2014. 7. 23.) + 4,559,103원(2014. 11. 28.) + 671,770원(2015. 7. 1.) + 1,217,910원(2015. 8. 3.)

8) 1,600,694원(2016. 6. 27.) + 3,138,546원(2014. 11. 27.)

9) ○카드 대출금 채무 변제 내역

1	2014. 9. 29.	2,719,080	6	2015. 3. 27.	8,748,701
2	2014. 10. 29.	3,456,659	7	2015. 4. 24.	7,493,483
3	2014. 11. 28.	4,559,103	8	2015. 5. 26.	7,214,231
4	2014. 12. 22.	6,278,370	9	2015. 6. 26.	3,278,624
5	2015. 1. 27.	9,839,981	10	2015. 7. 24.	2,845,734
		합계			

10) N카드 사용대금 납부 내역

1	2014. 9. 29.	3,121,882	10	2015. 2. 27.	1,114,981
2	2014. 10. 27.	1,167,608	11	2015. 3. 27.	1,440,823
3	2014. 10. 27.	1,453,622	12	2015. 4. 27.	288,682
4	2014. 11. 27.	78,351	13	2015. 4. 27.	1,294,682
5	2014. 11. 27.	3,138,546	14	2015. 5. 27.	78,355
6	2014. 12. 29.	426,004	15	2015. 5. 27.	1,488,304
7	2014. 12. 29.	1,781,562	16	2015. 6. 29.	1,380,863
8	2015. 1. 27.	3,686,813	17	2015. 7. 27.	1,175,620
9	2015. 2. 27.	1,060,855		합계	

11) 제1심 법원의 F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P 명의의 F은행 계좌와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W건물관리사무소, 서울시 지방세, V, X주식회사와의 거래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